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현행화 안내 및 협조

1. 관련 :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-757호('22.2.14.)
2.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화하오니, 참고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현행화 내용

구 분	기 준	변 경	비고
음성확인서 미제출(기준 미달 포함) 내국인 조치	시설에서 5일(비용 자부담) + 자가에서 5일 격리	시설에서 5일(비용 자부담) + 자가에서 2일 격리	해외입국자 격리기간 조정(10일 → 7일)에 따른 변경(2.4~)
우크라이나 難 내국인,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	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	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※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자기격리	외교부 재외국민 보호과-3765호(2.12~)

※ 그 외 기준은 기존 유지(붙임 참고)

- 붙임 1.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 2부(국·영문)
2.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2부(국·영문)
3. 관련공문 2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각실과, 고등교육기관전체, 고등외국교육기관전체, 소속기관, 소속단체, 시도교육청

주무관

김유진

행정사무관

김미희

코로나19대응학교전결 2022. 2. 14.

상황총괄과장 **최보영**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
괄과-518 (2022. 2. 14.)

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14동 (어진동)

/ <https://www.moe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7142 팩스번호 044-203-7079 / kyj2126@korea.kr

/ 대국민 공개